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1/3

심의일자/장소	2023.1.10.(화) /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		
사업명	마곡 D15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복합개발사업		
신청위치	강서구 마곡동 마곡도시개발사업구역 내 D15		
의결번호	2023-1-1	심의결과	원안 의결

[심의 내용] 건축 + 경관 + 교통

- 제출된 안으로 '원안의결'되었으며, 아래 건축분야 및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인·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「건축법」 제4조, 「경관법」 제28조 및 「도시교통정비촉진법」 제17조에 의한 건축·경관·교통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,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「건축법」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.

<건축 분야>

□ 건축계획

- 직장어린이집 설치시(2F) 원아 수에 대한 예측 수요를 검토하여 면적 및 위치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바람.
- 업무시설이 위치한 층에는 공용의 라운지, 주방(탕비실)을 계획하기 바람.
- 공유오피스 존은 전용공간과 복도·통로 공간으로 구분하여 세밀하게 검토하기 바람.

□ 구조

- 지하4층에서 3층으로 변경됨에 따른 기초 저면이 낮아져 이에 대한 지반내력을 검토하기 바람.
- 건물규모 및 중요도를 고려할 때 지반등급 S4로 지내력 부족 구간을 치환공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기초 저면 변화를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검토하기 바람.

- 계속 -

2023.1.10.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2/3

심의일자/장소	2023.1.10.(화) /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		
사업명	마곡 D15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복합개발사업		
신청위치	강서구 마곡동 마곡도시개발사업구역 내 D15		
의결번호	2023-1-1	심의결과	원안 의결

[심의 내용] 건축 + 경관

□ 방 재

- 방재실 근무자들이 화재, 침수, 지진, 테러, 코로나 등 각종 재난 시 피난 안내와 소방차 유도 등 대응 가능한 재난대응메뉴얼로 건물에 적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형 매뉴얼 SOP(standard operation procedures)를 만들어 두어야 하며, 시나리오형 매뉴얼은 교육과 훈련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작성하여 소방안전과리자에게 인수인계하도록 조치하기 바람.

< 공통사항 >

1. 「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」 등에 따라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기 바람.

- 1) 녹색건축인증 : 비주거/그린1등급
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: 비주거/1++등급
- 2)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: 비주거/31.55%

구 분		PV	BIPV	지열(밀폐)	연료전지
신재생에너지 설치량(kw)	비주거	379.96	-	3,114.53	-

- BIPV(건물 일체형 태양광) 모듈 색상 등은 건축물 디자인에 어울리는 것을 선택하고 설계·시공 시 구조 검토 등을 통해 패널 및 부속물의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

- 3) 상기 기준 중 ‘2. 환경관리부문’ 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(초미세먼지 포함) 저감 계획 수립

- 계 속 -

2023.1.10.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3/3

심의일자/장소	2023.1.10.(화) /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		
사업명	마곡 D15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복합개발사업		
신청위치	강서구 마곡동 마곡도시개발사업구역 내 D15		
의결번호	2023-1-1	심의결과	원안 의결

< 공통사항 > (계속)

-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 등의 절차 이행 시 아래의 사항을 확인 받기 바람.
 - 기계환기장치 설치 기준 충족 여부(주거, 비주거)
 - 「건축물내진설계기준」(KSD411700)에 따른 비구조요소 (건물 외 구조물) 내진설계기준 충족 여부
- 승강기 및 전기실·기계실 설치 관련 권장 사항
 - 승강기는 자가발전장치(회생제동장치) 일체형으로 적용
 - 전기실 바닥 레벨보다 1m 이상 낮은 곳에 메인 배수 펌프 설치된 기계실 확보
- 수돗물 재처리시설(중앙정수처리장치) 설치·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, CO₂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‘불필요한 시설’ 이므로 설치 제한을 권장함.
- 다음 대상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(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)
 - 대지면적 1,000㎡ 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,500㎡ 이상의 건축물
 -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‘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’ 을 참고 하여 적용
- 「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」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·시공하기 바람.

- 끝 -

2023.1.10.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